<서식6>

정책연구 평가 결과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<table>
<tr><td>정책연구과제명</td><td colspan="2">문화재수리 경력, 실적관리 하위법령 및 세부기준 연구</td><td>연구기관/책임연구원</td><td>한국건축역사학회/ 김왕직</td></tr>
<tr><td>부서/과제담당관</td><td colspan="2">수리기술과/최이태</td><td>담당공무원</td><td>정춘호</td></tr>
<tr><td>연 구 방 식</td><td colspan="4">1. [ ] 위탁형 용역 2. [ ] 공동연구형 용역 3. [√] 자문형 용역</td></tr>
<tr><td>연구자 선정방법</td><td colspan="4">1. [√] 일반경쟁계약 2. [ ] 수의계약</td></tr>
<tr><td>연 구 기 간</td><td colspan="4">2013.3.22 ~ 2013.11.21 (8 개월)</td></tr>
<tr><td>연 구 결 과</td><td colspan="4">•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안의 하위법령안 마련
• 문화재수리기술자·기능자의 경력·등급 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안 마련
• 문화재수리능력평가(실적관리) 방법 및 절차 기준안 마련
•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기준 및 절차안 마련
• 「문화재감리 업무수행 지침」 및 「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」의 현황·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향 제시</td></tr>
<tr><td>평 가 결 과</td><td colspan="4">•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 : 부합
- 당초 하위법령안과 세부기준안 등을 마련, 관련 법령 입법 추진 시 활용 가능
• 추진방법의 적절성 : 적절
- 분야별로 연구팀과 자문단을 구성, 운영하는 등 추진방법은 적절하다 할 수 있음
•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: 충실
- 계약 당시 요구했던 과업범위에 충실하게 연구되었음
•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여부 : 부
- 관련 법령안은 최초로 개정되는 사항이라 표절 등 불가
•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: 활용가능
- 하위법령안 입법추진 시 활용가능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평가자 확 인</td><td>구 분</td><td colspan="2">평가전문위원</td><td colspan="2">과제담당관</td></tr>
<tr><td>성 명</td><td colspan="2">문화재위원 이 상 필</td><td colspan="2">수리기술과장 최 이 태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평 가 보고회</td><td>개최일자</td><td>2013.11.21</td><td>장 소</td><td colspan="2">정부대전청사 1동 203호</td></tr>
<tr><td>참석자</td><td colspan="4">이상필(문화재위원), 이경미(문화재전문위원), 이석범(금성건축사사무소)</td></tr>
</table>